

## 6. 건설공사감리원배치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1999-266호 1999. 8. 30.

제1조(감리원 배치기준) ①발주청이 감리원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원 배치를 협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감 리 원 수 (인 · 월)

공사비(억원)	단순한공종	보통의공종	복잡한공종
50	30	33	36
70	38	42	47
100	50	56	61
150	69	76	84
200	86	95	105
300	117	130	143
400	146	162	179
500	173	193	212
700	225	250	275
1,000	295	328	361
1,500	404	448	493
2,000	504	559	615

②감리원 배치기준은 1주일 44시간, 1개월 25일 및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각 등급별 감리원수는 당해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감리

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text{감리원수} = \sum_{i=1}^n (N_i \times S_i)$$

$N_i$  = 각급 감리원의 수(인 · 월)

Si=각급 감리원의 환산비

③공사비라 함은 발주청의 총 예정금액(자재대포함) 중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④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⑤공사비가 2000억원 이상일 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하되, 단순한 공종은 -10%하고 복잡한 공종은 +10%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text{감리원수} = 1.6192X^{0.769} \quad (X : \text{보통의 공종 공사비})$$

⑥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 공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물이 없는 일반부지 조성</li> <li>-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li> <li>- 지방도, 농촌도로</li> <li>- 우수구거</li> <li>- 포장보수</li> <li>- 준설 및 매립</li> <li>- 보통조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대교량(200m이상)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li> <li>- 도시가로 및 간선국도</li> <li>- 간선하수구거</li> <li>- 600mm 이상 하수구거</li> <li>- 400mm 이상 상수구거</li> <li>-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li> <li>- 하수도 및 수로터널</li> <li>-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li> <li>- 공항활주로</li> <li>- 하천수문 및 통문</li> <li>- 대형 조경구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li> <li>- 장대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li> <li>-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 교차로</li> <li>-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li> <li>- 하구언 및 갑문</li> <li>- 소구경 상수 및 하수 관거</li> <li>-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처리장</li> <li>- 배수 및 양수펌프장</li> <li>-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li> <li>- 대형구조물 기초공사</li> <li>- 대형구조물 개축</li> <li>- 수중 구조물</li> </ul>

2. 건축공사(건축법시행령 별표의 용도분류에 의함)

구 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 당 공 종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li> <li>- 창고시설</li> <li>- 주차장등 자동차 관련 시설</li> <li>- 축사등 동물 관련시설</li> <li>- 종묘배양시설등 식물 관련 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li> <li>- 근린생활시설</li> <li>- 종교집회장등</li> <li>- 교육연구 및 복리시설</li> <li>- 묘지관련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숙박시설</li> <li>- 교도소, 감화원등</li> <li>-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등</li> <li>-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육관, 운동장등 운동 시설</li> <li>- 공연장등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의료시설</li> <li>- 공항, 철도, 터미널, 항만, 종합여객시설</li> <li>-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li> <l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관광휴게시설 중 관광탑</li> </ul>

제2조(최소 배치기준) 발주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되 현장 상주감리원은 다음의 최소 배치기준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최소배치기준	비 고
단순공종인 경우	현장상주 3인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2인
단순공종이외의 경우	현장상주 5인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4인

제3조(비상주감리원의 배치) 감리원수에서 비상주감리원의 비율은 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적용할 수 있다.

제4조(감리원수 조정) ①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당해공사가 다음의 경우에 해

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조정 배치할 수 있다.

1. 전기, 통신, 계장 등 특수분야에 대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계약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 기타 공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 ③발주청은 통합감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사현장별로 산정한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하여야 한다.
- ④발주청은 공사에예정가격의 88%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수를 증가배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6항제2호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